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I.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873
(1) 선거 관리 .....	874
(2) 유족 비 상 금 .....	874
(3) 연 금 지 급 금 .....	875
(4) 도열병긴급방제비 .....	875
(5) 냉해긴급방제비 .....	876
(6) 손해배상금 지급 .....	876
(7) 우암상가재해대책비 .....	877
(8) 조사용역비 .....	877
(9)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	878
(10)태풍피해 응급복구비 .....	878
II.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	879
III. 결 토 보 고 .....	879

# I.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19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3억 6,143만 2천원으로 그중 도의원 재선거의 9건에 10억 8,964만 9천원이 지출되고 62억 7,178만 3천원은 불용액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예 산 현 액	불 용 액
예 비 · 비	7,361,432	1,089,649	6,271,783	6,271,783

##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예 . 비 비 지 출 사 유
세 항	세세항	사업명				
10건			1,089,649	1,044,811	44,838	
1111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	④ 경상 사업비	선거관리	100,634	56,246	44,388	청주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경비
2214 인사고시 관 리	③ 기본 경상비	유족보상금	41,561	41,560	1	공무중 사망자유족보상
		연금지급금	39,818	39,818	-	공무중요양비등 지급
4131 농산관리	⑤ 주요 사업비	도열병 진급방제비	57,773	57,727	46	벼이삭도열병 방제비 진급지원
		냉해 진급방제비	4,550	4,547	3	7월중순이후 이상저온에 로 인한 냉해예방진급방 제
4173 식량작물 사	⑤ 주요 사업비	손해배상금 (유예금)	29,900	29,900	-	진흥원내 소류지 익사자 손해배상금 가집행유예 금지급
5122 주택지도	⑤ 주요 사업비	우암상가 재해대책비	150,000	150,000	-	'93. 1. 7우암상가 아파 트 붕괴사고에 따른 건 물채체 및 잔해물철거비
		조사용역비	31,400	31,000	400	우암상가아파트도괴원인 조사용역비
5222 재해대책	⑤ 주요 사업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602,513	602,513	-	'93. 7. 11 ~ 14 집중호 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31,500	31,500	-	'93. 8. 8~ 10 호태풍 (로빈)피해복구비

(1) 선거관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주 소요액	차액부족액 (예비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1111 지방의회의원선거관리						100,634	100,634
	⑤경상사업비					100,634	100,634
		107 급량비	-	-	-	4,125	4,125
		213 국내여비	-	-	-	3,120	3,120
		221 수용비수수료	-	-	-	3,500	3,500
		229 재료비 기타	-	-	-	504	504
		241공공요금	-	-	-	120	120
		265 연료비	-	-	-	600	600
		335 공기관동에 대한위탁금	-	-	-	88,665	88,665

도의회 안 상 열 의원의 당선 무효로 청주시 제2선거구 도의회의원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하여 예비비에서 재선거 시행에 소요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및 선거관리 경비를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그 집행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유족보상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주 소요액	차액부족액 (예비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2214 인사고시관리			554,460	79,116	475,344	516,905	41,561
	③기본경상비		529,460	75,756	453,704	495,265	41,561
		311보상금	30,000	6,731	23,269	64,830	41,561

민원담당관실에 근무하다 '92. 11. 28일 사망한 고 신형옥의 유족 보상금이 공무원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지급토록 결정되어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됨.

(3) 연금지급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액 (예비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2214 인사고시관리			581,784	336,427	245,357	285,175	39,818
③기본경상비			499,730	294,843	204,887	244,705	39,818
		316 연금지급금	10,000	9,377	623	40,441	39,818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다 사망한 고 송중학의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28,884천원) 지급 및 청주소방소 음 영.기의 3인의 요양비 (11,557천원)로서 공무원 연금법 제26조 및 공·교의료보험법 제51조의 규정에 공무원상의 요양비로서 적합하다고 봄.

(4) 도열병 긴급방제비

(본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액 (예비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4131 농산관리			11,039,043	4,336,163	6,693,800	6,747,543	53,663
⑤주요사업비			9,652,493	3,852,353	5,800,140	5,853,803	53,663
		441 자치단체에 대한자본보조	9,652,493	3,852,353	5,800,140	5,853,803	53,663

(증명출장소)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액 (예비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4131 농산관리			399,210	18,548	380,662	384,772	4,110
⑤주요사업비			397,190	17,138	380,052	384,162	4,110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97,120	17,138	380,052	384,162	4,110

벼이삭도열병 조기방제 도모를 위해 긴급지원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

(5) 냉해 긴급방제비

(본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4131	농산관리		11,262,575	4,995,213	6,307,362	6,311,652	4,290
	⑤주요사업비		9,885,025	4,284,885	5,600,140	5,604,430	4,290
		441 가치단체에 대한자본보조	9,885,025	4,284,885	5,600,140	5,604,430	4,290

(증평출장소)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4131	농산관리		407,431	26,886	380,545	384,805	260
	⑤주요사업비		405,411	18,334	387,077	387,337	260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05,411	18,334	387,077	387,337	260

이모작으로 벼를 늦게 심은 만식담은 이상저온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출수시 이삭도열병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냉해와 함께 큰 피해가 우려되어 이삭도열병 및 냉해예방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온당하다고 봄.

(6) 손해배상금(유예금)지급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4173	식량작물시험		107,996	88,174	19,882	49,722	29,900
	⑤주요사업비		78,491	60,229	19,262	49,162	29,900
		314 배상금	100	-	100	30,000	29,900

농촌진흥원내 소류지 익사사고 피해자인 박광호외 3인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의 1심 판결결과에 따른 가집행 유예금 지급으로 이견이 없음.

(7) 우암상가 재해대책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5122 주택지도			4,213,361	-	4,213,361	4,363,361	150,000
	⑤주요사업비		3,381,500	-	3,381,500	3,531,500	150,000
		441 자치단체에 대한자본보조	3,381,000	-	3,381,500	3,531,500	150,000

'93 1. 7일 발생한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붕괴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건물 해체 및 잔해물 정리 등 이재민 대책에 소요되는 재해대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

(8) 조사용역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5122 주택지도			4,363,361	-	4,363,361	4,394,761	31,400
	⑤주요사업비		3,531,500	-	3,531,500	3,562,900	31,400
		252 용역비	-	-	-	31,400	31,400

'93. 1. 7일 발생한 우암상가 아파트 화재붕괴 재난에 대한 도곽원인의 공학적 조사연구를 위한 조사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온당하다고 사료됨.

(9)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5222 재해대책			2,821,740	1,687,948	1,133,792	1,736,305	602,513
	⑤주요사업비		2,690,000	1,655,354	1,034,646	1,637,159	602,513
		441 자치단체에 대한자본보조	2,190,000	1,297,000	893,000	1,495,513	602,513

'93. 7. 11 ~ 7. 14 기간중 호우로인한 복부지역(제천군)피해복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봄.

(10)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후 소요액	차액부족 액(예비 비지출)
세항	세세항	목					
5122 재해대책			3,424,253	3,076,257	347,996	379,496	31,500
	⑤주요사업비		3,292,513	3,039,166	253,347	284,847	31,500
		441 자치단체에 대한자본보조	2,792,513	2,679,925	112,461	143,961	31,500

'93. 8. 8 ~ 8. 10 기간중 제7호 태풍 로빈의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영등군) 피해복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 II.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음.

## III. 검토의견

### <일반회계>

1993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73억 6,142만 2천원으로 그중 도의원재선거의 9건에 10억 8,964만 9천원이 지출됨.

그 내역을 보면,

- 보상금 및 년금지급금으로 8,137만 8천원을 지출한 것은  
고 송중학의 1인의 유족보상금 부족분이며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이었고
- 벼 이삭목도열병 긴급방제 및 만식담 냉해예방 긴급방제
- 진흥원 소류지 익사자 손해배상금
- 우암상가 아파트 재해대책비 및 원인조사 용역비
-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등도 예측을 불허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이었다고 사료됨.
- 다만 도의회 안상열 의원 당선 무효로 인한 청주시 제2선거구 도의회의원 재선거실시비용 산정에 보다 정확을 기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은 4,429만 4천원의 불응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 <특별회계>

'93 충청북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음.